

경상북도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55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20. 8. 14.

제 출 자 : 경상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「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제반 사항 정비

2. 주요내용

- 경상북도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변경(안 제7조)

3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련법령 발췌 : 붙임

6. 관련부서 협의

- 가. 규제심사 :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§법무혁신담당관-8223(2020.7.20.)

- 나.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

§감사관-10490(2020.7.17.)

다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제외대상

§여성가족행복과-7873(2020.7.17.)

라. 입법예고 :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및

제4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§에너지산업과-14664(2020. 7. 23.)

마. 비용추계서(예산관련)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§예산담당관-9446(2020.07.22.)

-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: 붙임

바.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입법 선행절차 : 특이사항 없음

경상북도 조례 제 호

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업무소관 부지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 략) ② 위원장은 <u>행정부지사</u> 로 하며 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. ③ ~ ⑥ (생 략)	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업무소관 부지사</u> ----- ----- -----.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

제4조(부지사)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.

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도 행정사무 전반(다만,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.)
2. 도지사의 명에 의한 소속 공무원의 지휘·감독

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경제통상, 일자리 창출, 투자유치, 과학기술산업 진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동해안 정책, 해양수산 등 환동해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<신설 2020. 3. 30.>
3. 국회, 정당, 의회, 사회단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
4. 도정 홍보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론기관 협조,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가.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가.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가. 재정수반 요인 없음.

4. 작성자

동해안전락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지방행정주사 송상훈(054-880-7632)